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24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9. 3.)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9. 9.)

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위원)

원안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호의2 중 “진열·보관 또는 운송”을 “운송”으로 한다.

제89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u>진열·보관</u> 또는 <u>운송</u> 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4의2. ----- ----- ----- ----- <u>운송</u> -----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9조의3(과태료)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u>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